

투자권유준칙

전면개정 2014. 9.23

개정 2014.12. 3

개정 2015.10. 2

개정 2016. 2.16

개정 2016. 5. 9

개정 2019. 9. 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제2장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9.6)
2.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자정보파악시 원금보존을 희망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

제2장 투자자 정보확인

제4조 (방문목적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4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6조 (투자자정보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4.12.03)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까지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정 2019.9.6, 2015.10.2.)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

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2016.2.16)

제8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관련 투자금융상품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

제9조 (투자권유절차)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6)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15.10.2.)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신설 2019.9.6)

제10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6, 2014.12.03)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6, 2014.12.03)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신설 2019.9.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9.9.6)

제11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 등은 개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적합성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개정 2019.9.6)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개정 2019.9.6)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및 일임계약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신설 2019.9.6)

제13조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

다.(개정 2016.2.16)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과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9.9.6)
- ③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삭제(2014.12.03.)
- ⑤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⑦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

제14조 (해외자산투자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3.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의 환율변동,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4.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9.9.6)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9.9.6)

제4장 위험도 분류

제15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별표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를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 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지)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3.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신설 2019.9.6)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17조 (계약사항의 확인) 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유선상으로 계약절차가 관계법규 및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의 “계약사항의 확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자는 계약을 진행한 자가 아닌 부서의 준법감시책임자나 확인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수행한다.

③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은 방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18장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투자금융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호의 규정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 밖에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9.9.6)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또는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대리하는 행위
3.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1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성향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9.9.6, 2016.2.16)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5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제6호]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 간 구분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하여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에 관한 사항

제22조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적격한 실명확인증서에 의하여 실제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 등은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하며, 관련사실을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특정금융거래 등의 보고) ①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재산임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점검) 회사는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14.9.23)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12.3)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5.10.2)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6.2.16)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설명 의무) 제1항의 개정에 따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의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의 폐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9)

제1조 (시행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에 따른 사명변경으로 인하여 규정상의 ‘타임폴리오투자자문’을 ‘타임폴리오자산운용’으로 변경하여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6)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별지 제3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별지 제4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확인서(개정 2014.12.3) (폐지 2015.10.2)

[별지 제6호]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삭제 2014.12.3)

[별지 제7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고객용)(폐지 2016.4.1)

[별지 제8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회사용)(폐지 2016.4.1)

[별지 제9호] 계약사항의 확인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배점기준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및 투자성향별 가능상품

[별표 제3호] 적합성판단 기준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

[별표 제5호] 일임계약 적합성판단기준

[별표 제6호]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기준(추가 2014.12.3)

[별지 제1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 (개정 2019.9.6)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개인용)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PART1

1. 고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9세 이하 20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이상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등

4. 고객님의 금융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수익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

8.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5천만원 이하 7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유자금운용 퇴직금운용 생계자금 마련 대출금 상환 기타()

PART2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직원작성	취약투자자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본인은 귀 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귀 사에 제공한 위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귀 사에 통지하여야 귀 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날짜 및 시간 _____
- 고객연락처 _____
- 고객명 _____ 본인구분 본인 / 대리인
-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 해당 여부 해당 / 해당없음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게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으로 활용될 것이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기밀로 보호됩니다.

[별지 제2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서(개인용)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점수 _____ 점

- 안 정 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예정기간(PART1의 2번 참조)

- 3년이상
- 1년 ~ 3년 미만
- 1년 미만

3. 최종투자자유형 분류

구분		투자위험감내도		
		단기(1년 미만)	중기(1년~3년 미만)	장기(3년 이상)
투자자성향	(저위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정보확인 직원: _____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알려 드렸습니다.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투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개정 2019.9.6.)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PART1

1.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
2.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가능)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펀드, 주식 신용거래등
4. 고객님의 금융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향후 이익 수준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이익이 없으며, 향후 이익 전망이 불투명함
- 8.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것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 9. 고객님의 이익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적자상태
 -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 적극적투자수익실현
 - 지수추종 수익실현
 - 이자,배당등 안정적수익
 - 위험했지
 - 기타()

PART2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직원작성 취약투자자여부 YES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인은 귀 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귀 사에 제공한 위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귀 사에 통지하여야 귀 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날짜 및 시간 _____
- 고객연락처 _____
- 고객명 _____ 본인구분 본인 / 대리인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의게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
 으로 활용될 것이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서 기밀로 보호됩니다.**

[별지 제4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서(법인투자자)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점수 _____ 점

- 안정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예정기간(PART1의 2번 참조)

- 3년이상
- 1년 ~ 3년 미만
- 1년 미만

3. 최종투자자유형 분류

구분		투자위험감내도		
		단기(1년 미만)	중기(1년~3년 미만)	장기(3년 이상)
투자자성향	(저위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고위험)	위험중립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정보확인 직원: _____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알려 드렸습니다.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사업자 등록번호:	투자자 법인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확인서 (개정 2014.12.3)(폐지 2015.10.2)

[별지 제6호]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폐지 2014.12.3.)

[별지 제7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고객용)(개정 2019.9.6)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고객보관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 계약자명: _____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 부서 및 직위 설명 (인 또는 서명)

본 확인서의 작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명의무)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면밀히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가 운용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시의 투자전략은 시장에 맞도록 조정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기본보수, 성과보수)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과 관련한 위험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 ✓ 시장위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 ✓ 거시환경 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위험
 - ✓ 개별기업 위험: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
 - ✓ 유동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 위험
 - ✓ 기타 위험()
- 계약기간 중 일부해지 및 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분산투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당사의 운용일까지의 성과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에 따른 보유자산 매도 시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회사용)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회사보관용

- ※ 대상 계약명: _____
- ※ 투자위험등급: _____
-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계약담당자: 부서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고객님의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사항

1. [투자권유문서]를 [받았음, 받지 못함, 교부를 거부 하였음]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설명 [받았음, 받지 못함]
4. 이 계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5. 투자에 따른 [절대적 위험 및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함]
6. 투자결정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보수체계]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20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9호] 계약사항의 확인

계약사항의 확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권유준칙 제17조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한다.

- 투자자성명(법인명): _____
- 계약체결 금융투자상품: _____
- 계약일자: _____
- 계약담당 임직원 등 성명: _____

- 투자자의 신분은 확인하였습니까?
- 계약의 체결은 당사의 담당 임직원 등과 대면을 통하여 체결되었습니까?
-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받으셨습니까?
- 본 계약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상시 존재하며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본 계약은 법률적으로 투자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투자결정 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기본보수 및 성과보수 등의 수수료율 및 당사의 징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으셨습니까?

● 확인일시: _____

● 확인자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 기타 특이사항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분류기준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PART1 배점(SCORING) 기준

문항		①	②	③	④	⑤
1	개인	4	4	3	2	1
	법인	1	2	3	4	4
2	공통	1	2	3	4	5
3(*)	공통	-1	2	3	5	5
4	공통	1	2	3	4	
5	공통	5	4	3	2	1
6	공통	5	4	3	2	1
7	공통	3	2	1		
8	공통	-2	2	4	6	
9	공통	2	3	4	5	
10	공통	5	4	-2	-2	

* 확인서상의 번호는 좌에서 우측으로 부여되며 선행(行)종료되면 차행에서 번호가 연속됨
3(*)에서 중복응답을 경우 가장 높은 배점 하나만을 적용함

□ 점수환산 방식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의 문항1에서 10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함

-개인고객 총배점: 47

▶ 환산식 = 결과점수 ÷ 총배점 × 100 ≒ (소수점이하 절사)

□ 투자성향 분류

구분	PART1	최종투자자성향
안정형	20점 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40점 이하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60점 이하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80점 이하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 투자자 성향분류

구분	성향	단계	위험도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5단계	저위험  고위험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4단계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3단계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2단계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1단계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및 투자성향별 가능상품

○ 투자대상의 종류 및 위험도(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	매우 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고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구조 등이 특수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투자일임 및 자문상품 (자산배분유형)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대상상품없음]		
채권		투기등급 회사채 (BBB- 이하)			회사채 (BBB+ ~ BBB0)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ETF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일반주식 ¹⁾ 공모주식	헷지된 주식형		
ETF		레버리지ETF		Index ETF			
선물,옵션		선물, 옵션	선물 (헷지에 한함) 옵션매수				

○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위험등급 투자성향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투자일임 및 자문 상품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대상상품없음]		
안정형						투자권유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1) 일반주식이란 초고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내거래주식을 말함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단 기준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상품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파생상품 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별표 제5호] 투자일임 투자자성향 분류 및 적합성 기준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성향에 대한 분류는 [별표 제2호] 에 따른 투자자 유형(1차기준)과 위험감내도(투자기간 등)(2차기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차기준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배점기준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구분	PART1	최종투자자성향
안정형	20점 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40점 이하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60점 이하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80점 이하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 2차기준

1차기준에 의한 분류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의 2번 문항을 적용하여 위험감내도를 감안한 2차기준에 의한 평가를 함

-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극투자형 및 공격투자형일지라도 위험중립형으로 분류함

구분		투자기간(위험감내도)		
		단기(1년 미만)	중기(1년~3년 미만)	장기(3년 이상)
안정형	(저위험) ⇕ (고위험)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 적합성 판단

1차기준과 2차기준에 의한 투자자성향 분류 후 최종적인 적합성 판단을 함

- 투자기간 1년 미만은 1차기준에 관계없이 부적합으로 분류함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은 투자상품별위험도 분류기준에 적합한 상품이 회사에 없으므로 부적합으로 분류함

구분	적합성판단
안정형	부적합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적합
공격투자형	

[별표 제6호]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기준

○ 자산배분유형

- ▶ 순수주식형: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 주식파생형: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능한 투자일임상품
- ▶ 주식채권형: 고위험채권 및 공모주식 위주의 투자일임상품

○ 세부자산배분유형

- ▶ 절대수익형: 일반적인 BM추종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절대수익추구 전략을 통한 절대수익 및 초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일임상품
- ▶ 성장형: BM을 추종하는 성장형으로서 장기적인 투자전략하에 BM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 가치주형: 가치주 및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유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가치주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상품
- ▶ 하이일드형: BBB+이하의 고위험채권과 공모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 해외투자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자산배분유형	투자자유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순수주식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절대수익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가치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해외투자형	
주식파생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절대수익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주식채권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하이일드형	